

『21세기 자본론』의 오류와 한국의 소득분배

오 정 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 『21세기 자본론』의 주요 내용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4)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 1971~)가 1950년경부터 1970년 때 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오다 1980년대 이후 악화되기 시작해 그 추세가 21세기 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과 유럽의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한 정치경제학 저술이다.

피케티는 1971년 파리근교에서 태어나 “부의 분배”(Wealth Distribution)이라는 논문으로 1993년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EHESS)과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1995년 까지 미국 MIT대의 조교수로 재직한 후 1995년 고국으로 돌아와 프랑스 과학연구센터 연구원(1995~99)을 지낸 후 고등사회과학원 교수(2000~현재) 파리경제대학 교수(2006~현재)로 재직 중이다. 2006년 대선 중에는 잠시 사회당 대통령 후보 자문관을 지내기도 하고 2012년 대선 중에는 사회당 올랑드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동료교수들과 함께 발표하기도 하는 등 사회주의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해 오고 있는 소장 정치경제학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가 큰 정치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소득분배 문제를 1700년대에서 2012년에 이르는 방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21세기 자본론』이 출간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세기 자본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는 자본주의에서 소득분배는 국민소득 중에서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몫인 자본소득분배율(α)=자본수익률(r)*자본/소득비율(β) 라는 제1 근본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는 제1 근본법칙의 중요 변수인 자본/소득비율(β)은 자본/소득비율(β)=저축률(s)/성장률(g)이라는 제2 근본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저축률은 안정적이므로 자본/소득비율은 증가해 소득분배구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피케티는 이런 그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1700년대-2012년에 이르는 방대한 통계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결국 이처럼 악화일로가 전망되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소득집중도가 심화되고 특히 자본집중도는 더욱 심화되어 자본주의는 자산 중에서 상속자산 비율이 증가하는 중세와 같은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적 국가(social state)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고율의 누진 소득세와 누진자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진소득세의 경우에는 상위 0.5~1% 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이 80~90%에 이르는 고율의 몰수적(confiscatory) 누진소득세, 상위 5~10%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50~60%의 몰수적이지는 않지만 고율의 누진소득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소득 20만 달러(2억 2천 만원) 이상인 경우 50~60%, 50만 달러(5억 5천만 원)~백만 달러(11억 원)에 대해서는 80% 정도의 누진소득세를 부과해도 미국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누진적인 소득세만으로는 금세기에 들어 점차 심화되어 가는 자본집중과 세계화되어 가는 세습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글로벌 누진 자본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소득세에 대해서는 먼저 부과대상을 예금 주식 채권 파터너쉽 그리고 상장 비상장회사에 대한 참여 지분 등 모든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시장가치로 평가한 개인순자산으로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 20만 유로(2억 7600만 원)이하 0~0.1%, 20만~백만 유로(13억 8000만 원) 0.5% (13억 8천만 원 경우 690만 원), 백만~5백만 유로(69억 원) 1% (69억 원 경우 6900만 원), 5백만 유로 이상 2%, 10억 유로(1조 3800억 원) 이상 5~10% (1조 3800억 원 경우 1380억 원)를 부과하는 등 상당히 급진적인 누진적 자본세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에 고율의 누진적인 세금을 부과하되 일부 국가만 할 경우에는 자본의 해외도피가 우려되므로 국제적인 협조와 합의 하에 글로벌 누진자본세를 부과하자는 현재의 세계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2. 『21세기 자본론』의 오류

1) 자본주의 제1 근본법칙의 오류

가. 자본주의 제1 근본법칙

피케티는 자본주의 제1 근본법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Piketty, 2014, p.52).

$$\text{자본소득분배율}(\alpha) = \text{자본수익률}(r) * \text{자본/소득비율}(\beta)$$

이는 단순한 항등식으로서 만약 자본/소득비율(β)이 600%이고 자본수익률(r)이 5%이면 자본 소득분배율(α)은 30%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본수익률은 이윤 지대 배당 이자 로열티 자본 소득을 포함하는 총자본수익률(gross rate of profit)이다(Piketty, 2014, p.52). 따라서 만약 자본 수익률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에 자본/소득비율(β)이 상승하면 자본소득분배율(α)이 증가해서 소득분배가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수익률(r)이 5% 그대로인데 자본/소득비율(β)이 800%로 상승하면 자본소득분배율(α)은 40%가 되어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나. 자본주의 제1 근본법칙의 오류

피케티의 자본주의 제1 근본법칙의 첫 번째 문제는 자본/소득비율(β)과 자본수익률(r)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즉 자본/소득비율(β)이 자본수익률(r)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신고전학파에서는 자본의 한계수익률이 자본이 증가할수록 체감하므로 자본/소득비율(β)과 자본수익률(r)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피케티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Piketty, 2014, p.215). 다만 그는 자본수익률(r) 하락 정도가 자본/소득비율(β) 증가분보다 적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본소득분배율(α)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Piketty, 2014, p.233).

이를 후기케인즈학파(Post-Keynesian)의 주장을 이용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후기케인즈학파의 주장 중 가장 간단한 칼도어(Kaldor, 1956)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우선 소득(Q)이 이윤(Π)과 임금(W)으로 분배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Q \equiv \Pi + W \equiv rK + W \quad (K: \text{자본})$$

그리고 이윤과 임금 중 일정부분이 각각의 저축률, 즉 이윤저축률(s_π) 임금저축률(s_w)에 의해 저축되어진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총저축(S)은 다음과 같이 된다.

$$S \equiv s_\pi \Pi + s_w W \equiv s_\pi rK + s_w (Q - rK)$$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S \equiv s_w Q + (s_\pi - s_w)rK$$

이 총저축은 사후적으로 언제나 총투자(I)와 같다.

$$I \equiv s_w Q + (s_\pi - s_w) r K$$

여기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r * K / Q \equiv 1 / (s_\pi - s_w) * (I / Q - s_w)$$

여기서 K/Q 는 자본/소득 비율(β)이다. I/Q 는 소득 중 투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투자율이다. 식을 단순화하기 위해 임금은 모두 소비한다고 가정($s_w = 0$)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r * \beta \equiv 1 / s_\pi * I / Q$$

이는 자본소득/소득 비율($r * \beta = \alpha$)는 자본가의 저축률과 투자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자본가는 이윤을 남기지 않고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된다는 후기케인즈학과 분배이론의 대표적인 명제 중 하나다. 만약 이윤저축율이 20%, 즉, 이윤의 80%를 투자하고 투자율이 10%이면 자본소득/소득 비율은 50%가 된다.

이를 변형해서 자본수익률(r)과 자본/소득비율(β) 간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r \equiv 1 / s_\pi * I / Q * 1 / \beta$$

즉 언제나 자본수익률(r)과 자본/소득비율(β)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의 오류

가.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

피케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은 다음과 같다(Piketty, 2014, p.166).

$$\text{자본/소득비율}(\beta) = \text{저축률}(s) / \text{성장률}(g)$$

여기서 국민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 즉, 저축률이 일정할 경우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국민소득에서 자본의 비율인 자본/소득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제1 근본법칙인 자본소득

분배율(α)=자본수익률(r)*자본/소득비율(β)과 결합하면 자본수익률이 하락하지 않는 한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자본가의 소득 즉,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하게 되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소득 분배가 더욱 불평등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예를 들어 저축률이 12%이고 성장률이 2%이면 자본/소득비율(β)은 600%가 된다. 여기서 자본수익률이 만약 5%이면 30%가 자본소득분배율이 되어 국민소득 중에서 30%가 자본가에게 분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성장률이 1.5%로 하락하면 자본/소득비율(β)은 800%가 된다. 여기서 자본수익률이 5% 그대로이면 40%가 자본소득분배율이 되어 국민소득 중에서 40%가 자본가에게 분배되므로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피케티는 앞으로 인구고령화로 저축률은 상승하고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성장률이 1.5%로 하락하는데 저축률마저 15%로 상승하면 자본/소득비율(β)은 1000%가 되어 자본수익률이 5% 그대로이면 50%가 자본소득분배율이 되어 국민소득 중에서 50%가 자본가에게 분배되므로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피케티는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저축률은 상승하고 성장률은 하락하게 될 것이므로 소득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자본/소득비율의 증가로 자본수익률이 4%로 하락하면 자본/소득비율(β)은 800%가 되어 소득분배는 변하지 않게 된다.

<표 1> 성장률 저축률 변화에 따른 피케티 법칙에 의한 분배구조 변화 예시

성장률(g)	저축률(s)	자본/소득비율(β)	자본수익률(r)	자본소득분배율(α)
2	12	600	5	30
1.5	12	800	5	40
1.5	15	1000	5	50
1.5	15	1000	4	40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본/소득비율(β)=저축률(s)/성장률(g) 식이 어떻게 성립하느냐이다. 그 다음은 성장률과 저축률의 관계다. 먼저 이 근본법칙의 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 식은 솔로우(*Solow*, 1956)의 성장이론에서 주장된 결과다. 솔로우는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총체적 선형동차 생산함수(aggregate linear homogeneous production function)를 가정했다. 즉 자본과 노동이 결합된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흔히 대학 학부수준의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보는 생산함수 모형이다.

$$Q = f(K, L) \quad Q: \text{생산량} \quad K: \text{자본량} \quad L: \text{노동량}$$

여기서 자본량은 실제 생산활동에는 기계 원재료 등 여러 가지 이질적인 자본들이 투입되지만 이들을 묶어 하나의 자본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총체적(aggregate) 생산함수라고 한다. 이 총체적 생산함수 가정은 나중에 영국 케임브리지학과와 미국 신고전학과 간에 자본논쟁(capital controversies)을 불러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선형동차함수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이 일정비율로 투입되면 생산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자본과 노동이 2배 증가하면 생산량도 정확하게 두 배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선형동차 가정은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생산량의 관계를 보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이 $1/L$ 증가하면 위 생산함수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Q/L = f(K/L, 1)$$

여기서 $Q/L = f(k)$, $K/L = k$ 와 같은 1인당 기준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f(k) = f(k, 1)$$

여기서 노동이 $n\%$ 증가하면 성장률(g)도 $n\%$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노동은 얼마가 증가하든 지 언제나 완전히 고용되어 노동증가율은 성장률과 같게 된다. 이 만큼 솔로우모형에서 완전고용과 선형동차함수 가정은 중요하다.

저축은 생산량의 일정비율, 즉 저축률(s) 만큼 저축하므로 1인당 저축량은 $s*f(k)$ 가 된다. 그리고 이 1인당 저축량은 항상 투자된다는 가정하에서 1인당 투자량(i)은 1인당 자본량의 증가분(Δk)과 같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했다.

$$\Delta k = s*f(k) - nk$$

여기서 솔로우는 다시 하나의 가정을 더 한다. 즉 1인당 자본량의 증가분(Δk)이 장기에는 제로라는 가정이다. 즉, 장기에는 1인당 자본량($k = K/L$), 즉, 흔히 자본장비율이라고도 하는 자본/노동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만약 장기에 자본/노동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s*f(k) = nk$$

여기서 노동증가율은 성장률과 같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된다.

$$s * f(k) = gk$$

이 식에서 바로 다음과 같은 피케티의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이 도출된다.

$$\beta = s/g \quad (k/f(k) = \beta)$$

나.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의 오류

이처럼 피케티의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에는 많은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이 가정들이 무너지면 이 법칙도 무너진다. 첫째 문제가 되는 가정은 노동증가율이 얼마가 되든지 완전히 고용되어 바로 성장률과 같다는 가정이다. 여기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실세계에서 노동은 완전히 고용되지 않아서 실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엄연한 현실이다.

두 번째는 이처럼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용과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다.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국가가 결정하겠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주로 기업가가 결정한다. 기업가가 미래의 생산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미래의 예상 수요와 예상 수익률 및 투입되는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요소의 비용과 인허가에 들어가는 규제비용 등 제반 비용들을 고려해서 노동과 자본을 고용해 투자를 결정한다

기업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다. 기업가는 자금을 조달해서 토지와 설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해서 투자활동을 한다. 따라서 기업가의 순이익은 총이익에서 생산활동 결과 생산된 생산액 중 임대료 이자 임금 배당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이다.

$$\text{기업가의 순이익} = \text{생산액} - \text{임대료} - \text{이자} - \text{배당} - \text{임금} - \text{세금}$$

이 순이익이 기업가가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다. 기업가는 미래의 기대순이익률(순이익/투자자본)이 적정 수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투자를 하게 된다. 대체로 순이익률이 최소한 이자율에 미래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수준이상은 되어야 투자를 하게 된다.

결국 고용과 성장률은 기업가의 투자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위 모형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노동은 언제나 완전히 고용되어 노동증가율은 바로 성장률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피케티는 자본주의를 단순히 자본가와 노동자 두 계급만 존재하는 사회로 가정하고 있는 계급사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가를 주식과 채권 투자자, 건물과 토지 임대업자, 자금대출업자 등 자본을 이용해 돈을 버는 순수한 자본가와 자본을 조달해서 기업을 하는 기업가로 나누어서 자본가 기업가 노동자의 세 계급으로 구성된 사회로 가정하면 결론이 달라진다. 이 경우 기업가의 투자수준에 따라 고용수준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런 기업가의 투자결정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에 누진적인 세금을 부과해 순이익률을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고용은 악화되어 피케티의 주장과는 반대로 소득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처럼 피케티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위 성장모형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인정한 초기의 경제학자는 케인즈(*Keynes*) 슈페터(*Schumpeter*) 로빈슨(*Robinson*)이다. 케인즈는 기업가가 미래의 예상수익률과 비용들을 고려하지만 워낙 많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가 특유의 긍정적인 “동물적 근성”(animal spirit)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투자를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 고용과 성장률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Keynes, 1936, p.161*). 슈페터는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해 간다고 주장했다(*Schumpeter, 1943, p.71*). 로빈슨은 기업가의 투자결정이 자본축적률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Robinson, 1943, p.55, 1962, p.36*). 그러나 피케티는 자본주의를 자본가와 노동자 두 계급으로 나누어 보는 계급사관을 토대로 분석하고 있어 자본주의 경제에서 투자, 그 결과 고용과 성장을 결정하는 기업가를 배제하고 있다.

이 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두 번째 가정은 저축($S = s * Q$) (s : 저축률)은 언제나 사전적으로 완전히 투자(I)된다는 가정이다.¹⁾ 1인당으로 표시하면 1인당 저축량 $s * f(k)$ 과 1인당 투자량(i)은 사전적으로 언제나 같다는 가정이다. 투자자금 마련에 필요한 저축만 하면 되고 저축이 많은 적든 언제나 모두 투자활동에 사용되어진다는 가정으로 여기서도 투자활동을 하는 기업가의 역할은 배제되어 있다.

이 가정으로 인해 생산함수에서 포함된 자본량의 증가분인 투자를 대신해 저축률이 등장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언제나 저축과 투자가 같다는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저축률이 포함된 위 식은 도출될 수 없다.

이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가의 역할, 특히 기업가의 투자활동을 배제함으로써 자본가에게 어떤 과세를 해도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피케티는 자본에 누진과세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에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투자가 줄어들고 그 결과 고용이 줄어들면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지만 위 모형에서는 저축은 언제나 완전히 투자되고 노동은 언제나 완전히 고용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자본가에게 과세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 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세 번째 가정은 장기에서는 자본/노동비율 즉, 자본장비율(k)이 일정하다는 가정이다. 역시 이 가정, 즉 $\Delta k = 0$ 이 성립하지 않으면 위의 식 $\Delta k = s *$

1) 국민경제 항등식 $Y \equiv C + I$ 에서 $Y - C = S \equiv I$ 는 국민경제의 투자 활동 결과 소득이 발생하고 소비하고 남은 저축은 투자와 사후적으로 일치한다는 개념으로 저축이 사전적으로 언제나 완전히 사용되어져 투자와 일치한다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다. 학부 수준 거시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f(k) - nk$ 에서 보듯이 위의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이 도출될 수 없다. 이 점은 피케티도 인정하고 있다(Piketty, 2014, p.168). 자본장비율이 변하지 않으면서 장기와 또 다른 장기를 비교하면 인구증가율의 하락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면 자본/소득 비율이 상승해 자본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한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정은 가상의 세계를 전제로 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증가율이 하락하면 자본이 파괴되지 않는 한 자본장비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인구증가율이 하락하면 생산구조가 보다 자본집약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의 자본대체도 증가해 자본장비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구증가율 변화로 자본장비율이 변화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이 도출되는 위 식은 도출될 수 없다.

넷째로 분배구조와 관련해 이 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중요한 가정은 위에서 가정하고 있는 생산요소 투입이 증가할수록 생산성이 하락하는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토대를 둔 총체적 선형동차함수를 이용해서 한계자본생산성과 한계노동생산성을 도출하고 한계자본생산성은 자본수익률과 같아지고 한계노동생산성은 임금과 같아지는 신고전학과 분배이론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다음 자본수익률에 대해 임금이 올라가면 즉, 노동의 가격이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자본/소득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Piketty, 2014, p.217).

만약 노동의 가격이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자본을 더 사용하게 되는, 즉 생산요소를 대체하는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자본장비율이 올라가서 자본/소득 비율이 상승하고 그 결과 자본수익률이 하락하는데 자본/소득 비율 상승분이 자본수익률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남아서 결국은 자본소득분배율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노동의 가격이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자본을 더 사용하게 되는, 즉 생산요소를 대체하는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고 0보다는 큰 경우에는 자본장비율이 올라가서 자본/소득비율이 상승하는 정도가 자본수익률 하락분 보다 적어서 자본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케티는 역사적으로 대체탄력성이 1.3~1.6 정도이고 점차 자본의 협상력이 커져서 자본소득분배율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iketty, 2014, p.221). “역사적으로”으로는 일반적으로 장기로 볼 수 있는 기간인데 대체탄력성이 1보다 커서 자본장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앞의 세 번째 가정, 즉 장기에 자본장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피케티의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 도출에 매우 중요한 가정-과 모순된다.

뿐만 아니라 이 이론에 의하면 임금이 올라갈수록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된다는 결론에 도달해 갈수록 기술이 진보하면서 기술집약도와 자본집약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인적자원의 수준도 높아져서 임금도 올라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즉 고급인력 고임금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경제양식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솔로우 형의 신고전학과 성장이론에 대해 로빈슨(Robison) 칼도어(Kaldor) 칼레스키(Kacki) 등 후기 케인즈학과(Post-Keynesian) 학자들과 스라파(Sraffa) 등 신리카도학과(Neo

Recardian) 학자들은 소득분배가 자본이나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노조활동 등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사회적 생산관계(social relations of production)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노조의 힘이 센 강성노조의 경우에는 자본집약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더 크게 상승해 노동소득/소득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년에는 기술진보와 인적자원을 중시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등장해서 생산요소 투입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한계생산성 체증의 법칙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위 이론은 송두리째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3) 소결

결국 피케티가 주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은 인구증가율이 얼마가 되든지 언제나 완전히 고용되고 저축이 얼마가 되든지 언제나 완전히 투자되는 신고전학파의 세계를 가정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을 이용해 인구증가율과 같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성장률이 인구증가율 둔화로 하락하면 대체로 저축률은 안정적이므로 자본/노동 비율이 변하지 않는 장기에는 자본/소득 비율이 상승해 소득이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배분된다는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각 종 통계를 견강부회식으로 인용해 합리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투자는 자본축적을 가져오는데 기업가의 투자 역할을 배제한 채 단순히 성장률 하락이 자본/소득 비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솔로우에 의해 1956년에 제안되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후 많은 비판에 부딪혔던 모형으로 기업가의 역할은 배제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그것도 많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도출해 낸 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자본에 누진적인 세금을 부과해서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를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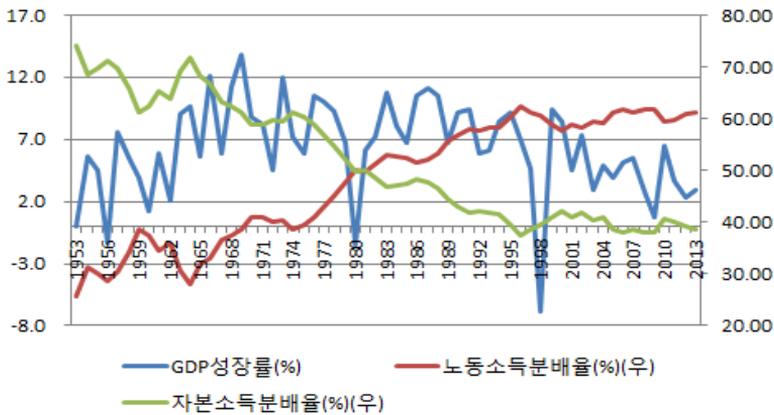
이 모형에서 기업가를 포함하면 기업가의 투자환경 개선 없이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결과는 고용악화와 성장둔화를 통해 분배구조의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성장둔화가 분배악화를 초래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가가 투자를 하지 않아서 고용이 안되어서 분배구조가 악화된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자본가에게 세금을 더욱 무겁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자본가들은 높은 자본비용으로 더 이상 투자해도 남는 순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투자를 줄이거나 해외로 탈출해 일자리는 더욱 없어지고 그 결과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 비율은 더욱 줄어들어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3. 한국경제와 21세기 자본론²⁾

한국경제의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1963~91년 중 연평균 9.5%에 달하는 고성장 지속 결과 꾸준히 상승해 왔다. 1964년 28.1%였내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중 62.6%까지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그 후 한국경제가 중성장기에 들어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18년 간 60% 내외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자본소득분배율은 1964년의 71.9%에서 1996년 37.4% 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그 후에는 평균 40% 수준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는 피케티의 주장대로 성장률이 상승하면 자본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경제성장률과 노동소득분배율 자본소득분배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렇다면 성장률 하락이 바로 피케티의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처럼 자본/소득 비율이 상승해서 초래된 결과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적인 자본소득비율은 1970년의 141%에서 2012년에는 369%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다.³⁾ 자본의 구성 중 건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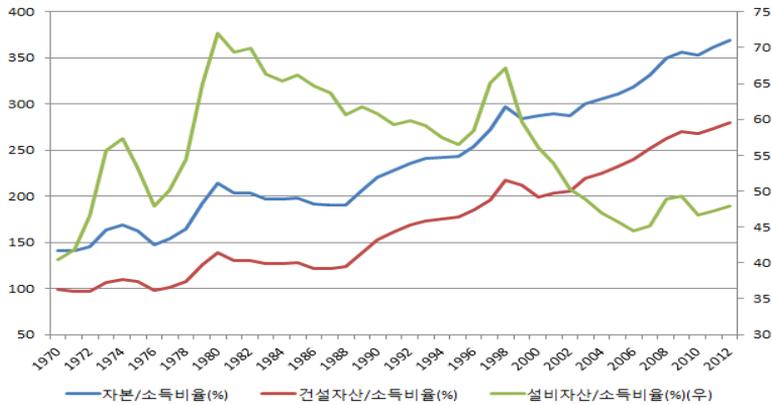
2) 오정근(2012)를 토대로 작성.

3) 피케티는 자본을 인적자본은 제외하고 인간에 의해 축적되어 개인이나 공공부문에 의해 소유되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합에서 금융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으로 정의하고(Piketty, 2014, p.46-47), 맑스(Marx)를 따라서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자본으로 국한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Piketty, 2014, p.46-47, p.229). 이러한 개념에 적합한 자본소득의 량을 추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국은행 대차대조표는 자산을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로 구성된 비금융생산자산과 토지자산 지하자산 임목자산으로 구성된 비금융비생산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는 생산활동에 사용된 비금융생산

산과 설비자산의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을 보면 건설자산/소득비율은 1970년의 99%에서 2012년에는 280%로 상승해 왔다. 그러나 설비자산/소득비율은 1970년의 40%에서 2012년에는 48%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특히 1998년 68%를 정점으로 그 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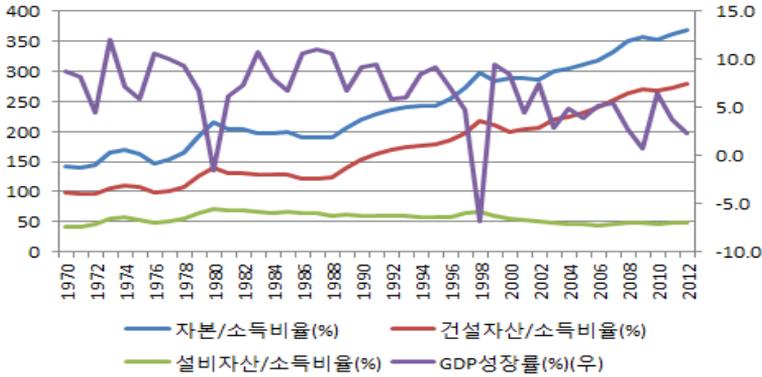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이러한 자본/소득 비율을 경제성장률과 함께 보면 고도성장기간 중에는 성장률과 비례해서 자본/소득 비율이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총자본/소득 비율은 건설자산/소득 비율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상승해 다. 즉 경제성장률과 무관하게 자본/소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설비자산/소득 비율은 경제위기시를 제외하고는 경제성장률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움직여 왔다. 근년에는 저성장을 반영해 설비자산/소득 비율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면 자본/소득 비율이 증가한다는 피케티의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은 적어도 한국경제에는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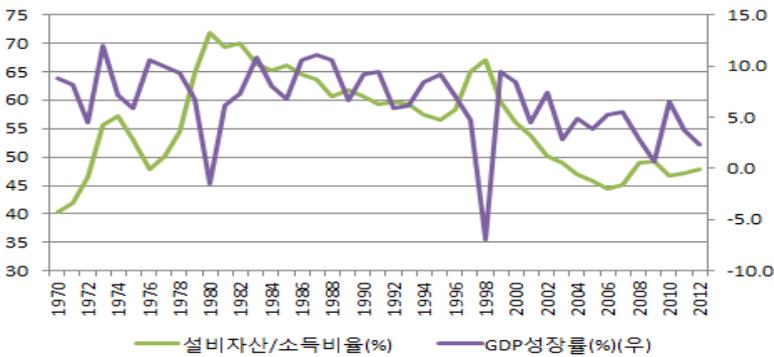
금융자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전체적인 자본의 규모를 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예금 등 금융기관의 부채는 대부분 대출되어 금융기관의 자산으로 계상되고 이는 다시 실물부문의 부채가 되기 때문에 비금융생산자자산의 규모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비금융생산자자산과 금융자산의 합에서 금융부채를 제외한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림 3>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과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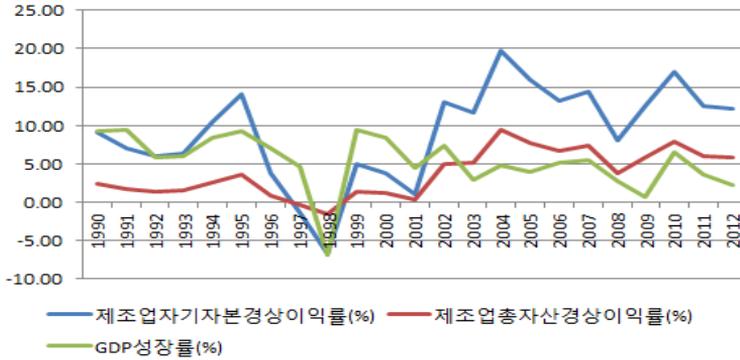
<그림 4> 한국의 설비자산/소득 비율과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의 자본수익률 추이를 보면 제조업 자기자본경상이익률과 제조업 총자산경상이익률이 1997년 금융위기 이전 1990~96년 중 연평균 8.1%, 2.1%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1999~2012년 중에는 연평균 11.4%, 5.3%로 높아졌다. 한편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9%에서 4.9%로 낮아졌다. 즉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자본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자본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투자가 활성화되어 자본축적이 빠르게 이루어진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투자가 둔화되면서 자본축적도 더디게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간별 특징은 금융위기를 전후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간 내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자본수익률이 200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의 관계를 보이며 변동해 왔다.

<그림 5>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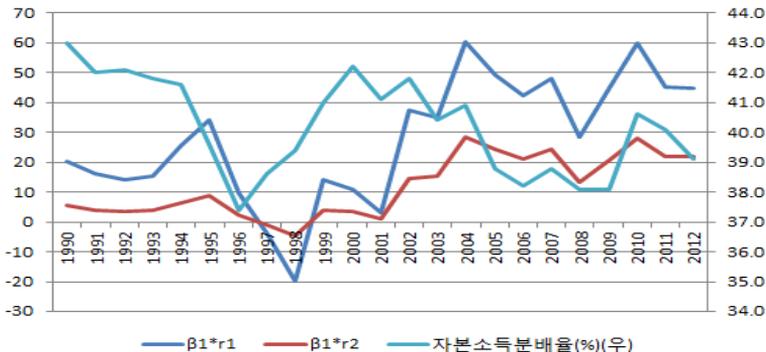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한편 피케티의 자본주의 제1 근본법칙의 현실적합성 여부를 보기 위해 자본/소득비율에 제조업 자기자본경상이익률과 제조업 총자산경상이익률을 곱해 두 가지의 자본소득분배율(각각 r_1 , r_2)을 계산해 보고 그 결과를 국민계정상의 자본소득분배율과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는 통계상의 제약으로 인해 제조업 수익률을 사용해 계산된 자본/소득 비율과 국민계정상의 자본소득분배율은 수준은 달랐지만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자본/소득 비율의 변화, 즉 자본집약도 또는 자본심화 정도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피케티의 주장대로 자본소득분배율을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피케티의 자본주의 제1 근본법칙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추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자본/소득비율*자본수익률과 자본소득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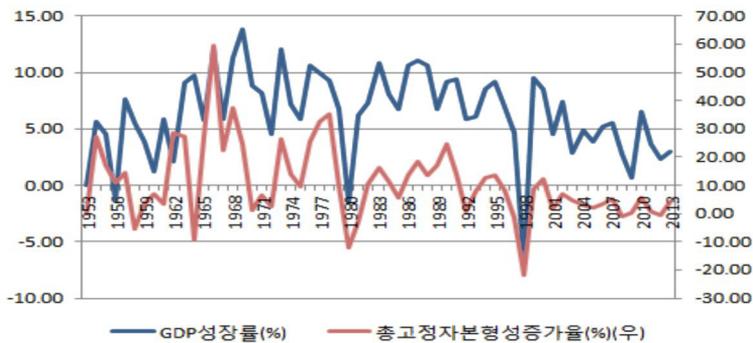
자료: 위 인용통계를 이용해서 계산.

그렇다면 자본주의 제1 근본법칙은 어느 정도 현실적합성이 있으므로 문제는 현실적합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제2 근본법칙이다. 제2 근본법칙 중 자본수익률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장률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변하고 있다. 자본/소득 비율은 경제성장률과 상관 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비자산/소득의 비율은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변하고 있다.

설비자산/소득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는 자본 소득분배율은 하락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상승했다. 설비자산/소득의 비율이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기간 중에는 소득분배구조 개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설비투자자 소득분배에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결국 소득분배 악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피케티의 자본주의 제2 근본법칙이 주장하고 있는 바처럼 성장률 둔화 자체가 아니라 성장률 둔화를 초래한 투자부진임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률의 변화는 투자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변하고 있다.

<그림 7> 투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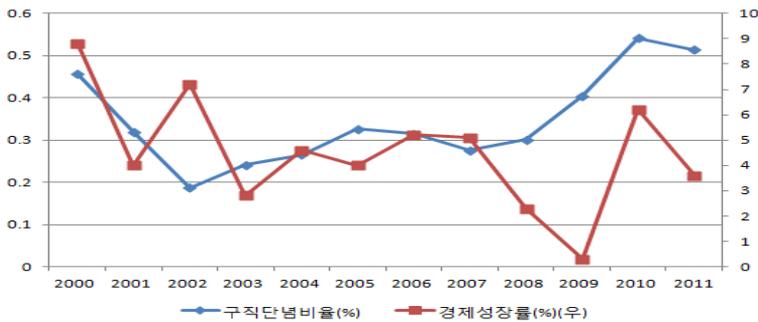
그렇다면 왜 투자가 소득분배의 중요한 결정요인인가. 피케티는 기업의 투자를 배제하고 소득 분배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투자는 고용을 통해 소득분배를 결정한다.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성장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지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성장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첫째, 경제가 성장하면 우선 일자리가 증가하여 일자리가 없던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일자리창출경로, 둘째, 경제가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저소득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일자리개선경로, 셋째,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증가하여 복지지출 등 보다 많은 재분배가 가능하므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소득재분배경로, 넷째, 경제가 성장하면 소비가 증가하여 일반

적으로 저소득계층인 자영업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소비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경제성장의 소득분배개선 효과가 큰 일자리창출경로와 일자리개선경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경제가 성장하면 구직의 어려움이 줄어들어 구직단념자⁴⁾가 줄어든다. 구직단념 비율과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두 변수 간에 상반된 관계가 존재하는데 특히 글로벌금융위기 이 후 구직 단념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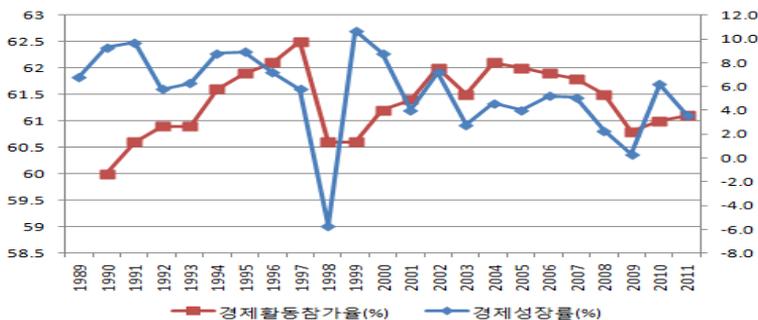
<그림 8> 구직단념 비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성장률과 거의 비례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일차적으로 구직을 단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여 그 만큼 소득 없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된다.

<그림 9>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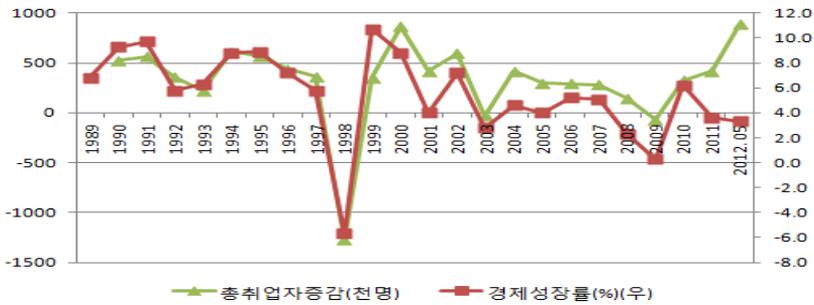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4) 구직단념자란 노동시장적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되며 구직단념비율=구직단념자/15세이상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둘째로 중요한 변수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증감이다.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의 증감 추이를 보면 거의 비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2011년 이후 취업자 중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의 증감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자영업자는 대부분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영세자영업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이차적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감소하여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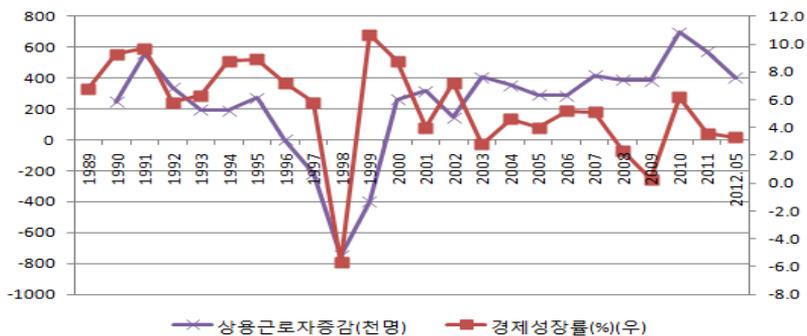
<그림 10> 총취업자 증감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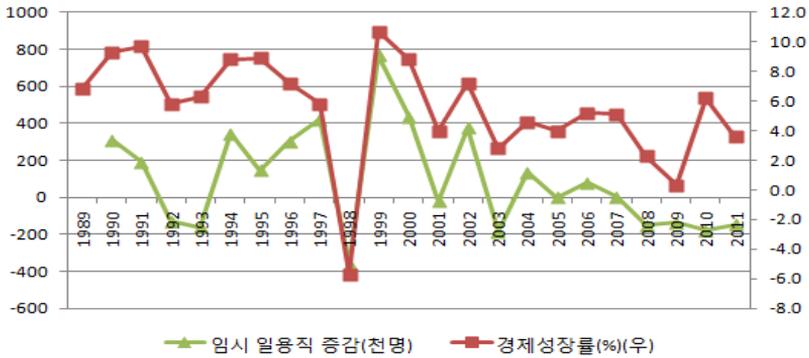
셋째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취업자 중에서 직업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와 직업안정성이 낮은 임시·일용직의 구성변동 문제다. 먼저 상용근로자 증감과 경제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서는 예를 들어 2008~9년 경제성장률 급락기간 중에도 상용근로자 증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상용근로자 증감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줄어들면서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상당히 견고한 추세를 유지해 오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림 11> 상용근로자 증감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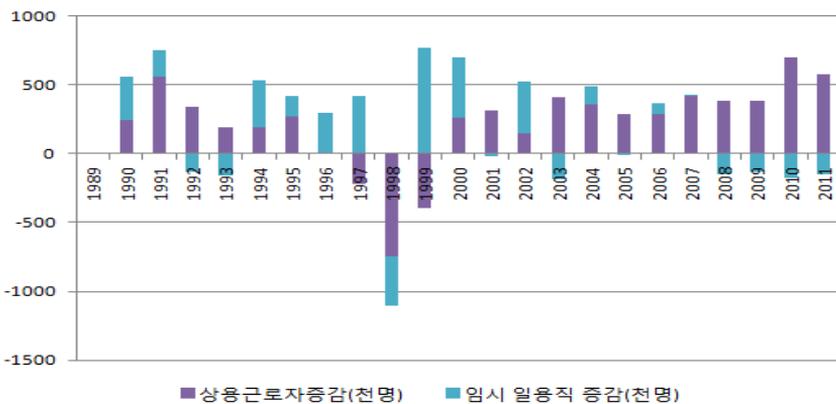
<그림 12> 임시·일용직근로자 증감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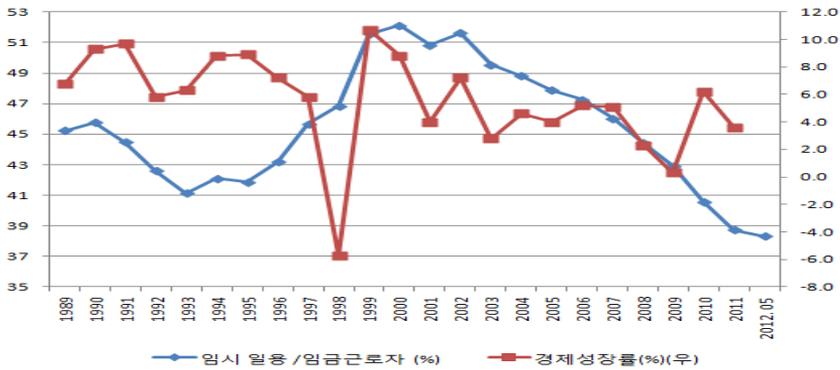
반면 임시·일용직근로자 증감은 경제성장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11년 경기회복 기간 중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를 합한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임시·일용직근로자 비율은 경제성장률 추이와 거의 무관하게 2000년 초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 추이와 무관하게 임시·일용직근로자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화되어 경기변동에 대한 노동시장의 완충역할이 줄어들었으므로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그림 13>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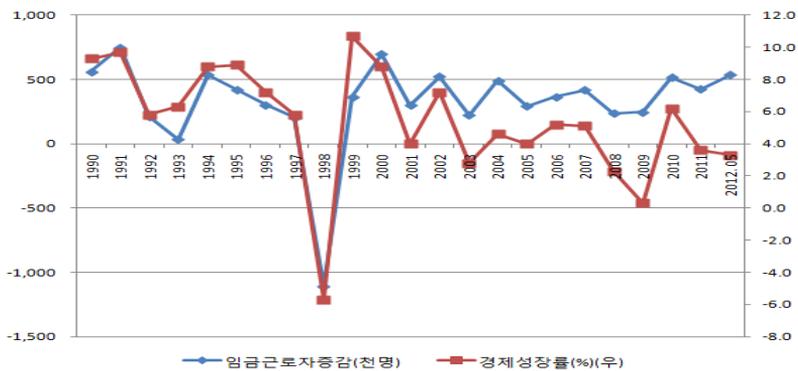
<그림 14> 임시·일용직근로자 비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결국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를 합한 전체 임금근로자 증감은 경제성장률과 거의 비례하여 움직여오다 2008년 이후에는 임시·일용직근로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경제성장률과 거의 무관하게 견고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힘입어 증가추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용근로자 증가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있는 반면 임시·일용직근로자가 경기하락시 경기에 민감하게 직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 15> 임금근로자 증감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이처럼 2008년 이후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경제성장률과 거의 무관하게 견고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데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영향과 더불어 2008~9년 같은 경기하강

기에도 해고가 쉽지 않을 정도로 경직적인 상용근로자와 일자리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비상용 근로자 간의 내부자 외부자(insider outsider) 문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경직적인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기업투자가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결국은 외부자(outsider)인 임시·일용직의 실직증가로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4. 『21세기 자본론』의 분석을 마치며

피케티가 주장하고 있는 세율구조를 보면 대체로 소득의 경우 연소득 5억 원 정도 이상이면 80%의 몰수적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연소득 5억 원 정도 이상은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순자산이 1조 3800억 원 정도 이상이면 10%의 자본세를 내는 경우 이론적으로 5년이 지나면 순자산은 50% 줄어들어 6900억 원이 되고 여기에 다시 5%의 자본세가 부과되면 10년 후 순자산은 3450억 원이 된다. 이 후 3%의 자본세를 10년 부과하면 10년 후 순자산은 2415억 원이 된다. 여기에 2%의 자본세를 10년간 부과하면 10년 후 순자산은 1932억 원으로 줄어든다. 대체로 2000억원 정도 까지는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피케티는 연소득은 5억 원 정도, 개인순자산은 2000억 원 정도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산상속도 급격히 줄어들어 피케티가 21세기 중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세습자본주의가 제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소득과 순자산에 대한 고율 과세, 심지어 몰수적 고율 과세는 “경제적으로 아무 쓸모 없거나 심지어 해롭기도 한 [고소득자나 고액자산보유자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약인 동시에 성장의 과실을 보다 넓게 배분하는 방법”(Piketty, 2014, p.513, []내는 필자주)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방법이 노동의 착취만 심화시키는 자본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생산수단을 공유할 것을 주장한 칼 맑스(Karl Marx)와 달리 자본의 사적 소유와 경쟁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을 제어할 수 있는 덜 폭력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Piketty, 2014, p.532).

개인의 연소득 5억 원은 정도, 개인순자산은 2000억 원 정도 이하가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칼 맑스(Karl Marx)의 주장처럼 생산수단이 완전히 공유되어 개인들의 사적 재산 소유와 경쟁의 동기가 완전히 사라진 공산주의 경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사적 재산 소유와 경쟁의 동기를 완전히 인정하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먼 경제구조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피케티는 사적 자본 소유와 경쟁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너무도 소득과 자산 소유의 평등에 치우친 나머지 좌측으로 많이 경도된 경제구조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개인은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기업가는 큰 기업을 이루려고 하는 기업이 정신이 훼손될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서 오히려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

험에 노출될 우려만 커지게 될 것이다⁵⁾.

한 마디로 개인의 근로의욕과 기업가의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투자와 성장은 둔화되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수 밖에 없어 일자리를 갖지 못한 계층은 더욱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게 되고 인기영합적인 정치인들은 세금을 더욱 올리면서 경제는 더욱 축소되고 마침내 경제사회적 불안이 크게 높아지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강점은 사적 재산소유를 토대로 한 경쟁의 효율성이 개인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동인이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성장해 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 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구축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진세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상속세도 필요하다. 다만 피케티의 주장처럼 사적 재산소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의 과세는 개인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해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앗아가서 경제사회적 혼란만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참고문헌

오정근,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Kaldor, N., “Alternative Theory of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XXIII, No. 2, 1956, pp.83-100.

Oh, Jung-Gun, *The Neo-Keynesian Theory of the Rate of Profit and Distribution*,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nchester, 1984.

Piketty, Thoma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2014.

Robinson, Joan, *The Accumulation Capital*, MacMillan, London, 1956.

Robinson, Joan,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MacMillan, London, 1962

Schumpeter, Joseph,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43.

Solow, Robert, M.,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LXX, Feb. 1956, pp.65-94.

5) 한국에서 자동차공장을 하나 짓는데 대략 10조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여기서 만약 대주주의 지분이 2000억 원 정도면 지분율은 2%에 불과해 언제든지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1년 간 경영한 결과 영업이익이 5000억 원 (투자액의 5%) 발생하고 이 중 배당을 1000억 원 했다면 대주주에게는 2%인 20억 원이 배당될 것이다. 이는 피케티가 주장하고 있는 90% 몰수적 고율의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어 18억 원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10조 원의 투자액 중 대출 등 외부자본이 8조 원이고 순자산, 즉 자기자본이 2조 원이면 10%의 자본세 부과대상이 되어 2000억 원의 자본세가 부과된다. 대주주는 2%인 20억 원의 자본세를 내야 한다. 배당소득 내고 남은 소득은 2억 원 밖에 없으므로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지분을 처분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소득세 자본세가 몇 년 부과되면 상속은 거의 할 수 없게 되어 자본의 집중이 해소되고 피케티가 말하는 세습자본주의가 해소된다는 구상이 피케티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중소기업 외에는 기업투자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피폐해 지는 것은 시간문제다.